

Human Rights



유엔인권해설집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국가인권위원회



EM013032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

주(註)

이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11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인권선언)

(모든 인간은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목차:

- 서문
-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
- 특별보고관의 직무수행과정
-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 특별보고관이 조치를 취하는 상황
- 피해자의 권리
-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 특별보고관에게 정보 또는 진정을 제출하려면?

부록: -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국 정부에게 보내는 질문서

서문

생명의 권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 권리는 모든 인권의 원천이므로 최대한도로 존중되어야 한다. 세계대전의 종료 및 식민지 해방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천명함으로써 인권의 증진과 보호의 초석을 쌓았다. 유엔총회는 “날 때부터 타고난 존엄성”과 “모든 인류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규정하고,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를 통해 생명의 권리를 천명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생명의 권리를 비롯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취한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조치였다. 그 뒤를 이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생명의 권리를 규정했다. 이 국제규약의 6조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생명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생명권의 증진과 보호는, 여러 국제규약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는 국가기관들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존중토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유엔총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명권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총회는 1968년 11월 26일 결의안2993(XXIII)을 통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사형범죄 용의자들에 대해서 가장 신중한 법적 절차의 혜택과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80년 제6차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의 대우에 관한 유엔회의 (United Nations Congress)는 “군, 법집행 및 기타 정부기관, 또는 정규군 또는 기관들의 지원 또는 묵인을 받는 준군사 집단 또는 정치적 집단들이 정적 또는 혐의자들을 살해 및 처형하는 관행”¹⁾을 규탄했다.

유엔총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약식 및 독단적 처형이 빈발하고, 정치적 동기의 살인이 발생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1980년 12월 15일 결의안 35/172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생명의 권리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절차를 보장하는 보장규정을 담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 14, 15조를 최저기준으로서 존중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정치적 동기의 처형과 살인에 관한 보고가 증가하자, 1980년대 초까지 약식처형을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의 관행과 관련하여 다루었던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²⁾는 약식처형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기로 결정하고, 198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이라는 혐오스러운 관행의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독립적인 전문가가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으로서 임명되었다. 특정 유형의 인권침해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82년 3월 11일 결의안1982/29에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유엔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적인 명망이 있는 인사를 “약식 및 독단적” 처형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는 1982년 5월 결의안 1982/35를 통해 약식 및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을 규정했으며, 변호사이며 범아프리카 변호사 연합회 초대 사무총장인 케냐의 S. 아모스 와코(S. Amos Wako)씨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은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1992년 와코씨가 사임하고, 세네갈 출신의 변호사이며, 범아프리카 변호사 연

1) 1980년 8월 25일-9월 5일 카라카스(Caracas)에서 열린 범죄의 예방과 범법자의 대우에 관한 제 6차 유엔회의의 참조: Report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1.IV.4), chap. I, sect. B, resolution 5. 참조

2) 유엔인권위원회의 산하기구로 1999년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로 개칭됨. [감수자주]

합회 설립회원이고,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크레 왈리 은디아예 (Bacre Waly Ndiaye)씨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³⁾ 같은 해, 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을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유엔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을 관련 국제조약이나 제도들이 보장하는 생명의 권리에 대한 모든 침해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시켰음을 의미한다.

유엔인권제도 내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은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주제별 메커니즘의 유형에 속한다. 주제별 메커니즘은 특정 국가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인권침해를 다룬다.⁴⁾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여 유엔 사무국에 보고되는 특정 유형의 개별 인권침해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업무권한은 조약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고 유엔기구들의 결의안에 그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 또는 유엔헌장에 기반한 절차라고 불리어 왔다. 특별보고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네바 유엔사무실에 위치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활동프로그램국(Activities and Programme Branch)의 지원을 받는다.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연례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다. 최근에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61 결의안에서 특별보고관에게 주어진 업무권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하도록 요청했다.

- (a)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
- (b) 제출받은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 특히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이 임박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경우, 또는 그러한 처형이 발생했을 경우.
- (c) 각국 정부들과의 대화를 강화 할 것.
- (d) 아동과 여성에 대한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대해서 그리고 시위나 평화적 대중 집회의 참가자, 소수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의 맥락에서 생명권 침해사건들에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e)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평화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f) 사형선고와 관련된 보호장치 및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

3) 제3대 특별보고관은 파키스탄의 아스마 자한기르 (Asma Jahangir)여사로 1998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재직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호주의 필립 알스톤 (Philip Alston)씨이다.[감수자주]

4) 유엔인권위원회가 설립한 최초의 주제별 메커니즘은 1980년 설치된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었다. 주제별 메커니즘의 다른 예로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등을 들 수 있다.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6조와 동 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표한 논평들을 유념할 것.

(g)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할 것.

특별보고관이 조사해야 할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 사건들”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규정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가와 그 대리에 의한 모든 행위 또는 비행위가 모두 포함된다.⁵⁾ 이러한 보편적인 국제법적 기준들이 특별보고관 활동의 실체법적 근거이다. 이러한 기본틀은 유엔기구들이 채택한 기타 조약들과 결의안들에 의해 보완된다. 그러한 보완장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⁶⁾ 사형에 직면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⁷⁾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조사에 관한 원칙,⁸⁾ 범죄와 권한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 등이 있다.⁹⁾

특별보고관의 직무수행과정

특별보고관은 주로 비정부기구, 각국정부, 개인들 및 정부간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직무를 수행한다.¹⁰⁾ 특별보고관은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 살해위협 등 구체적 사건들에 관한 정보나 생명권의 침해에 관한 일반적 정보들을 접수한다. 특별보고관은 접수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당사국 정부에 통보된다.

긴급청원

특별보고관은 초법적, 약식 및 독단적 처형이 임박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국 정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는 살해위협, 관련 국제규약들이 정한 사형에 관한 제한규정들을 위반하여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저질러진 생명권 침해사건들에 관한 주장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보고관은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는 국가 또는 장소로의 추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당사국 정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한다.

5) 특별보고관은 그 업무권한상 정부부문에 책임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지만, 특별보고관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에 의한 인명의 손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중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무장집단들과 마약밀매자들의 폭력 행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 1992/42 참조.

6) 1990년 8월 27일-9월 7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범죄의 예방 및 범법자 대우에 관한 제8차 유엔회의에서 채택. "Report by the Secretariat",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1.IV.2, chap. I, sect. B 참조.

7) 1984년 5월 25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4/50.

8) 1989년 5월 24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9/65. 경제사회이사회는 결의안 1절에서 각국 정부들이 국내법과 관행의 체계 내에서 해당원칙을 고려하고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9) 1985년 11월 29일 유엔총회 결의안 40/34.

10) 특별보고관의 활동방식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은 특별보고관이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E/CN.4/1993/46).

긴급청원에서 특별보고관은 당사국 정부에게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위협 또는 위험에 노출된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요청한다. 또, 관계당국에게 생명권의 침해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정한 조사와 더 이상의 생명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취해진 모든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한다.

긴급청원은 인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은, 국내 구제조치들을 완료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이 임박했다는 진정을 받으면 긴급청원을 제출한다.

1992년 7월 20일과 1996년 9월 1일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6,500명 이상의 개인들과 특정 가족들, 선주민공동체, 난민집단, 국내실향민 및 분쟁 지역의 민간인집단들 등 집단들을 대신해서 818건의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1995년 이후부터는 문제의 사건이 하나 이상의 주제별 메커니즘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 또는 실무그룹들과 합동으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그 밖의 사건주장

특별보고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초법적, 약식 및 독단적 처형에 관한 사건들은 사건개요의 형식으로 당사국 정부에 전달되며, 이 때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 침해자에 대한 사법 또는 징계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등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관한 질문서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들이 첨부된다. 당사국 정부에게 제출되는 질문서의 목록은 본 인권해설집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관련 국제규약이 정하는 사형집행적용 관련 제한규정에 반하는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지속적 불처벌 또는 법률에 관한 보고서 등의 일반적 성격의 주장들 역시 당사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 경우, 특별보고관은 당사국 정부에게 그러한 주장의 실제적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줄 것과 법조문 및 기타 관련 문서들을 비롯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의 답변과 후속 질문서

특별보고관의 질의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답변은 다양한데 사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진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별보고관의 주요 관심사는 언급도 하지 않는 짤막한 답변서만을 보내기도 한다. 특별보고관의 질의에 협조하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유엔인권위원회가 특별보고관의 업무권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질의

들이 답변되지 않고 남아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진정사건들에 대해 후속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들과 답변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후속 질문서를 발송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서로는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인 것,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것, 또는 사건의 사실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별보고관의 후속 조치는 특히 당사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제출된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주장들에 대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향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적, 독립적, 그리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제법에 의거한 의무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특별보고관은 정보를 제공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제출한 사건에 대한 정부 답변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낸다. 이 서한에서 특별보고관은 정보를 제공한 자들에게 추가 논평 또는 소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보 제공자의 진술 내용이 정부 답변서의 내용과 모순될 경우, 당사국 정부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후속 질문서를 발송한다.

당사국 방문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또 하나의 핵심적 업무권한은 현장방문이다. 현장방문의 목적은 당사국 내의 생명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직접 입수하고,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협력과 지원의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황들을 개선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특별보고관은 구유고슬라비아, 페루, 르완다,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콜롬비아, 부룬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다. 이 중 일부 방문조사는 다른 특별보고관들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방문대상국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생명권의 침해에 관한 주장과 보고의 수와 내용의 심각성을 근거로 결정한다. 또한 당사국 정부가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의 정보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반복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가에 대한 방문조사를 고려하게 된다. 특별보고관은 현장방문이 당사국에 대한 규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려의 표현이며 특정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서 유용한 권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방문 조사는 사법적 조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며 관계 사법당국의 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기타 활동

특별보고관은 국가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며, 세미나 및 회의에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시간이 허용할 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강연을 한다. 유엔제도 내에서는 다른 주제별 기구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그리고 유엔사무처 산하의 범죄 방지 및 형사국(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Division)을 지원한다. 또, 일반대중에게 자신의 활동과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들에 의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¹¹⁾ 연례보고서에는 자신의 활동과 업무방식, 특별보고관과 정부 간에 교환된 문서들의 요약,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 국가들의 생명권 상황에 관한 소견 등이 포함된다. 또,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결론 및 권고안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연례회기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되며, 이 토론에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토론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996년 처음으로 유엔인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에게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안들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¹²⁾

특별보고관이 발표하고 후에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반영되는 주장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생명권의 침해를 대략적으로 시사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할 수 있는지는 당사국 정부가 인권운동가들에게 허용하는 자유의 정도,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의 조직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는 일부 국가들에 관한 정보는 대단히 완벽한 반면, 어떤 국가들에 관한 정보는 전혀 입수되지 않거나 또한 제출되는 통보의 내용이 특별보고관이 주어진 업무권한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개입

특별보고관은 경찰, 보안기관, 또는 군대 등의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의 협조 또는 용인 하에 활동하는 집단이나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생명권의 침해를 조사한다. 또, 사법부가 국제적

11) 특별보고관이 최근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4개 보고서는 문서 E/CN.4/1997/60 및 Add.1, E/CN.4/1996/4 및 Add.1-2와 Corr.1, E/CN.4/1995/6 및 Add.1, 그리고 E/CN.4/1994/7 및 Add.1-2와 Corr.1-2에 포함되어 있다.

12) 1996년 4월 23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1996/74.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문서 A/51/457에 포함되어 있다.

보장이나 보호규정 등을 위반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개입한다.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생명권의 침해상황에 대해 행동을 취했다.

사형

1993년 이래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선고와 관련한 생명권의 침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특별보고관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특별보고관은 적용법률 또는 재판 이전의 절차를 포함하는 재판과정이 국제 기준,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 9, 14조와 사형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규정에 반하는 경우에 개입을 한다.

특별보고관은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경우, 특히 사형 선고에 직면한 피고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개입을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피고는 증거의 수집과 심사에 관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또, 모든 감형의 요소들이 참작되어야 한다. 재판 절차는 원심에서 사건을 다룬 판사가 아닌 판사들로 구성되는 상급법원에 의해 사실 심리 및 법률적 심리를 다시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면 또는 감형을 신청할 수 있는 피고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청소년, 정신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임신부인 경우에도 특별보고관이 개입을 한다.

아직 사형이 국제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여러 차례 사형제도 철폐의 바람직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므로 특별보고관은 회원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형에 관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사형의 확대 또는 부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살해 위협

생명과 신체적 완결성의 위협에 관한 보고 및 주장이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되는 진정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보호를 위해 긴급청원을 전달하는 것은 특별보고관의 핵심적인 업무권한이다.

구금 중 사망

특별보고관은 구금 중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한다. 이 경우 생명권의 침해는 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그리고 유기, 무력 사용 및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환경에 의해 발생한다.¹³⁾

13) 이 경우 특별보고관은 세계인권선언 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7조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또, 다음과 같은 국제규약들도 고려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안 3452 (XXX)),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 12월 10일

법집행 공무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경찰관과 보안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업무권한에 해당되는 또 다른 종류의 상황이다.¹⁴⁾ 무력의 사용이 절대적 필요성과 균형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보고관이 개입할 수 있다. 시위나 그 밖의 평화적 집회의 참가자에 대한 법집행공무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의 침해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국가 보안군, 준군사집단 또는 민간 무장집단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

특별보고관은 국가 보안군, 준군사집단, 정부의 지원 또는 용인 하에 활동하는 민방위군 기타 민간 무장집단에 의한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에 대응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집단들은 공식적인 군대 또는 경찰의 영역 밖에서 활동하지만, 내전 또는 국내분쟁이나 소요사태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 당국이 창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기관으로 간주된다.

무력분쟁시 생명권의 침해

민간인과 부상당한 또는 무기를 내려놓은 전투원들의 생명은 국제인도주의법의 보호를 받지만, 내전을 포함하는 무력분쟁 중에 이들에 대한 생명권 침해가 계속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¹⁶⁾ 특별보고관은 무차별 폭격 또는 의도적 처형에 의해, 또는 물, 음식, 의료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한 결과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긴급청원을 전달함으로써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집단살해

특별보고관은 집단살해의 경우에도 개입을 한다. 집단살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¹⁷⁾은 집단살해를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말살

유엔총회 결의안 39/46),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원칙 15 및 16,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 3조 (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결의안 34/169),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1957년 7월 31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663 C (XXIV)과 1977년 5월 13일 결의안 2076 (LXII)),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1990년 12월 14일 유엔총회 결의안 45/111),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징역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호에 관한 원칙집 (1988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안 43/173), 소년사법 행정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1985년 11월 29일 베이징 규칙, 유엔총회 결의안 40/3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7조 (1989년 11월 20일 유엔 결의안 44/25)

14)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주로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원칙 12와 14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 또는 그 밖의 집회에 관한 것이다.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강령 3조는 필요성과 비례성에 관해 언급한다.

15)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안 1994/67에서 특별보고관에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관련해서 민방위군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3절).

16)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들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특히, 제네바협약들의 공통된 3조, 제1추가의정서 51조, 제2추가 의정서 13조가 이러한 사건에 관한 일반 조항이다.

17)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 결의안 260 A (III)

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희생자 개인들을 대신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국가 당국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기관들에게 집단살해의 상황 또는 임박한 집단살해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환기한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국가로의 임박한 추방

특별보고관은 생명이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국가 또는 장소로의 임박한 추방, 또는 송환이 임박했다는 주장과 생명을 위협 받는 국가로부터 탈출하여 망명을 신청하려는 자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¹⁸⁾

불처벌

특별보고관은 불처벌이 인권침해 특히,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생명권 침해에 대한 모든 주장들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들을 적발하고 재판하여 처벌하며, 그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의 의무이다.¹⁹⁾ 그러므로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조치를 취한다. 특별보고관은 정기적으로 국가당국에게 그러한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범죄자들에게 불처벌을 허용하는 국내 사면관련 법률에 주목한다.

피해자의 권리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피해자들은 공적 또는 준공공적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공무원이나 다른 대리자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²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소속 인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행위는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의무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 이

18) 이러한 사건의 경우, 특별보고관은 세계인권선언(14조)이 규정한 망명의 권리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은 '초법적, 독단적 및 약식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조사에 관한 원칙'의 제5원칙이다. 제5원칙에서는 "모든 사람은 초법적, 독단적 및 약식 처형의 위협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비자발적으로 송환 또는 추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초법적, 독단적 및 약식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조사에 관한 원칙'의 제9원칙부터 제19원칙까지의 원칙들과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 및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제7원칙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초법적, 독단적 및 약식 처형의 효과적인 방지와 조사에 관한 지침서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1.IV.1) 및 집단학살 주장에 관한 유엔 조사에 관한 지침 (United Nations Office of Legal Affairs, 1995) 참조.

20)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의 2, 6, 11, 18, 19 원칙 참조.

러한 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배상을 제공하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1996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1997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수가 줄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자들은 여전히 토지권을 위한 투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차별을 방지하고 퇴치하려는 투쟁, 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여성, 아동, 노인, 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지어 추방당한 사람, 국내실향민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 보고서들에서 특별보고관은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수많은 요인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보고관은 일부 국가들이 사회적 문제들, 특히 급속한 도시화와 증가하는 빈곤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 선고, 특히 빈민들과 소수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단일 종족, 단일 종교, 또는 단일 민족의 국가를 설립하려는 민족적 투쟁이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생명권의 침해가 야기하는 소요와 내전이 촉발되었다. 더욱이, 무기밀매에 대한 통제가 부재하고, 밀수와 마약밀매를 통한 자금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게릴라의 등장이 가속화 되었고, 그들의 활동이 경제적인 수익성을 갖게 되었다. 정부와 게릴라 집단 사이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왔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법제도가 붕괴되었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과 차별적인 사법 적용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억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이미 불안정한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된다.

특별보고관은 생명권 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불처벌이 생명권 침해의 주원인이며 생명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각국 정부들은 생명권 침해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대규모 침해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갖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 국내 법원들에게 집단살해의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한 국제적 관할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채택할 필요에 대해 확신한다.

특별보고관은 생존권 침해의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은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나 보장들을 시행할 뿐만 아니

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방지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향후 인권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존 조약이나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 충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시행을 감시할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별보고관에게 정보 또는 진정을 제출하려면?

본 책자 8쪽에서 기술한 사항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진 개인, 집단, 비정부기구, 정부간 기구, 또는 기구들은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²¹⁾ 진정을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요구된다.

(a) 사건에 관한 정보: 날짜, 장소,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형과 관련한 생명권 침해의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 임박한 생명권 침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형과 관련한 임박한 생명권 침해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와 더불어 이미 제출된 항소에 관한 정보.

(b) 사건 피해자에 관한 정보: 피해자의 수, 알려진 경우에는 그들의 이름, 연령, 성별, 직업 그리고/또는 (임박한) 생명권 침해와 관련된 이들의 활동.

(c) 가해 혐의자에 관한 정보: 알려진 경우에는 혐의를 두고 있는 이유에 관한 설명, 가해자가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 집단 또는 개인들이 국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세부내용 (예, 명령계통을 포함하는 국가 보안군과의 협력관계,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묵인 또는 관용, 등)

(d) 정보제공자에 관한 정보: 특별보고관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

특별보고관이 가능하면 입수하고자 하는 기타 정보는 다음과 같다.

(a)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거주지 또는 출신지

(b)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정보: 이름, 소속 기관과 소속 기관에서의 지위 및 직책.

(c)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 특히 누가 어느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는지에 관한 정보.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d) 당국이 생명권 침해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또는 위협에 빠진 자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들. 특히,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21) 모든 유엔회원국은 특별보고관이 고려하는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하는 조약의 가입국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 기관이 제소를 받고 취한 조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시점에서의 조사의 진행상황.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특별보고관은 사형에 관련된 최근의 입법 움직임이나 사면관련법령, 또는 불처벌의 패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 등 생명권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도 환영한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 내의 전반적인 생명권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별보고관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주소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어야 한다.

Special Rapporteu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o OHCHR-UNOG,
1211 Geneva 10, Switzerland
Fax: 41 22 917 9006

부록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국 정부에 보내는 질문서

1. 사건 개요에서 주장된 사실들이 정확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의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2.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무엇입니까?
3. 부검을 실시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했습니까? 부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검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진정을 누군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제기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이며, 피해자와 진정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진정은 누구에게 제출되었습니까? 진정을 접수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를 취한 자는 누구입니까?
5. 진정의 주장에 대해서 조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6.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 또는 사법적 및 기타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의 세부내용과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한 조사 또는 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결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관련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론들은 확정적입니까?
7.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가 누구인지 파악했습니까? 그 자는 경찰, 보안군, 군대 또는 그들과 협력하는 집단들의 어느 부서 또는 부문의 소속입니까?
8. 가해 혐의자에게 사법조치 또는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처벌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가해자의 형사 또는 징계 책임을 확인했는지 그 절차의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한 제재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 어떠한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를 실시했으나 결론이 확정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배상을 했습니까? 했다면, 배상의 유형과 액수를 비롯한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